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경두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년 4월 29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함.

이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등(안 제2조)

법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관련 절차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나. 지급심사위원회(안 제3조)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급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0. 6.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의신청 등)

법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결정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급심사위원회)

① 지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방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방부 국제정책관
2. 국방부 계획예산관
3. 국방부 인사기획관
4. 국방부 법무관리관

5. 국방부 감사관

6. 국군재정관리단장

7. 위촉위원(2명)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미국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의신청서[제2조]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필요시 7일 연장)
신 청 인	① 성명(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현주소 		
	④ 전화번호 / E-mail /	⑤ 소속 / 직급 /	
	⑥ 임용일자 / 근무기간 /	⑦ 무급휴직 기간 00.00.00. ~ 00.00.00.	
신 청 사 유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지원금 결정 통지서 1부. 2.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명자료 1부.		

본인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또는 지원금 인정 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의
의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343, 6341